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170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7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.부터 2024. 9. 14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를 원고로 '채무자'를 피고로 한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순향

별지